

# DR&B Report

Policy

Business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P&B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 P&B Report 구성 소개

## 주요 구성



###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를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 별첨



###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 Contents

## I. 발의

08	<b>1. 발의 법률안 목록</b>
21	<b>2. 주요 법률안 소개</b>
	<b>법제사법위원회</b>
21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23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b>정무위원회</b>
24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5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26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8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30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b>기획재정위원회</b>
31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2	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b>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b>
33	12)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하은아의원 대표발의)
34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b>행정안전위원회</b>
35	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b>문화체육관광위원회</b>
36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37	1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38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39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b>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b>
40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41	2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42	2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대표발의)
43	2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b>환경노동위원회</b>
45	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46	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대표발의)
47	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48	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49	27)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b>II. 소위원회</b>
52	<b>1. 상정 법률안 목록</b>
53	<b>2. 주요 법률안 소개</b>
	<b>법제사법위원회</b>
53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b>행정안전위원회</b>
55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b>III. 상임위원회</b>
58	<b>1. 상정 법률안 목록</b>
60	<b>2. 주요 법률안 소개</b>
	<b>법제사법위원회</b>
60	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b>행정안전위원회</b>
80	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b>문화체육관광위원회</b>
83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IV. 국회 본회의

88      **1. 통과 법률안 목록**

89      **2. 주요 법률안 소개**

89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91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93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95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97          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9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04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106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09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20      **별첨.**    1. 용어해설

123          2. 국회일정표

# R&B Report

## 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6.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7. 검사징법 일부개정법률안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9.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11. 공소청법안
		12.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16. 국무위원 후보자
		1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3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4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4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9.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갈등관리기본법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9. 국가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192호



조정훈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시대전환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1.06. 제안

## 제안이유

대기업의 불공정 합병 시비, 경영권 분쟁 및 비리 의혹, 총수일가의 일탈 등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냄.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는 더 이상 해당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재벌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음.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적인 보완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건전한 시장 질서의 확립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핵심과제라 할 수 있음.

먼저,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모회사에도 그 손실이 전가됨. 특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지분을 다수 보유한 비상장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게 하여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회사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 지배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동안 0.00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 주요내용

- 가. 피출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장부열람권의 허용대상 범위를 피출자회사로까지 확대함(안 제406조의2 및 제466조, 제542조의6).
- 나. 상장회사의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의 소제기의 경우 6개월간 10만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그 요건을 완화함(안 제542조의6).
- 다.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시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2조의2 및 제542조의7).
- 라.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확보함(안

제542조의12).

마.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또는 서면투표제 실시를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함(안 제542조의14 신설).

SAMPLE

정부위원회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07076호

### 심사 진행 경과

#### 접수

2020.12.31. 제안

### 제안이유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관한 분산투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 등 유동화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하여 일정 범위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가 수시공시사항을 통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수시공시사항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시공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개발 신탁업자가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전 수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안 제81조제1항)

- i)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서로 다른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험이 분산되지 못하므로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외에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증권이나 그 증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함.
- ii) 투자가치가 높은 증권에 대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나. 수시공시의무 부담 완화(안 제89조)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연기사실 등 수시공시사항을 투자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을 전자우편 외에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사실 등 일부 수시공시사항은 투자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에 관한 부담을 완화함.

#### 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신탁재산 운용규제 개선(안 제103조제4항, 안 제105조제3항 신설)

현재 신탁업자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15까지만 금전을 수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합산하여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할 수 있도록 수탁 관련 규제를 완화함.

정무위원회

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134호



홍성국

선 거 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 속 위 원 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1.04. 제안

##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 및 결제의 편의성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배달앱 서비스의 거래규모가 2017년 대비 2019년 약 256% 증가하는 등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하여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 등이 배제되어 사실상 배달앱 거래에 대한 규율이 어려운 실정인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하여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남용·약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주와 공동 이익을 취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조항들을 배달앱사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배달앱사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이제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391호



이정문

선 거 구 충남 천안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1.14. 제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의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음.

그러나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작업결과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하도급 공정화를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한 행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자체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

이에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을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목적물의 종류 및 물량 등 상세내역, 하도급대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급사업 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안 제3조제2항).

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하도급감독관을 두고 그 자격·임명·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하도급감독관에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부속 건물을 출입하여 검사하고 서류제출 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 조의4 신설).

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시·도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 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원사업자를 대표하 는 위원을 합한 수가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와 같도록 함(안 제24조제3 항).

마.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11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683호



이학영

선 거 구 경기 군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17. 제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한다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바 있음.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270호



유정주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1.01.08. 제안

### 제안이유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을 모두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확률형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행물과 유사한 작동 기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사용자의 임의 거리를 통해 환금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행 행위가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2015년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도입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공개 및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임 내 구매화면에 확률정보 표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공개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5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2종) 중 국내 게임으로는 유일하게 1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국외 게임이 대부분 목록에 올랐습니다.

확률형아이템의 자율규제는 해외게임사와 국내게임산업협회의 비회원사 간(해외게임사vs국내게임산업협회 비회원사vs국내게임산업협회 회원사) 자율규제 준수의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과소비와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이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할 경우, 게임 사용자에게 아이템확률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해 게임 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1호 및 제33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918호



김영주

선 거 구 서울 영등포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선 횟 수 4선(17대, 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1.27. 제안

## 제안이유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부과금을 수납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극장을 통한 영화 배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통하여 영화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과금 부과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는 현재 영화(TSA), 방송(TST), VOD(비디오세) 등 3가지 산업에서 기금을 징수하여 콘텐츠 등 프랑스 영화산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재지와 관계없이 OTT 사업자에게 동영상과 관련된 일반매출을 기준으로 비디오세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독일에서는 OTT 사업자에 영화분담금(Filmabgabe)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해 넷플릭스가 유럽 연합 일반법원(Das Gericht der Europäischen Union, EuG)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8년 5월 16일 패소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대통령령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하고,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843호



이상헌

선 거 구 울산 북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22. 제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간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등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방송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권리 처리가 가능한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방송 후 24시간 내 동일한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는 음원의 유통 규모와 방식에 대하여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와 방송과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에 대한 권리 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적합한 규정 마련이 부재한 상황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 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임. 또한 음반 제작자 및 실연자 등 저작권리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라는 동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규제 공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한편, 최근 미디어 유통 및 소비에 있어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 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저작권리에 대한 공정의 원칙 실현과 소비자의 이용후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함.

## 주요내용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불명확성을 개선·보완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여 관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이제

사안명

제안번호

주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9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773호



정태호

선 거 구 서울 관악구를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21. 제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달성한 데에는 협력업체들의 기여가 있으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이익의 공유는 협력업체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유인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력관계를 수탁·위탁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기업 간 협력사례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항).
-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1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354호



이규민

선 거 구 경기 안성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01. 제안

## 제안이유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를 설립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문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명문장수기업 지정은 중견기업 중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있는 제도이고, 기업성장의 다양한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에 따르면 규모의 제한은 불필요해 모든 중견기업으로 지정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직·인력 등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도 정부의 고용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선행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견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5항).
-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중견기업 실정에 맞게 분리·운영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취소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5조의2).
- 라. 신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안 제17조의8).
- 마.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에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2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525호



김승원

선 거 구 경기 수원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12.16. 제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가 새로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전액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명단 공개 규정이 없어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단가를 새로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급인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제3호 및 제23조의2 신설).

# R&B Report

## Ⅱ.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4.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5.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164호



김성원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정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재선(20대, 21대)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 접수

2021.01.05. 제안

#### 소위원회

2021.01.07. 상정/축조심사

##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난해 10월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신고의무자의 범위, 수사기관 등의 조사 또는 수사 의무 등에 있어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아동학대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안 제11조제6항 신설, 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안 제50조제5항 신설, 안제55조, 제61조제2항 신설, 안 제61조의2 신설 및 제63조제1항 등).

## 주요발언

### 법무부차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입니다.

이게 주거침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접수한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그 부모, 아무튼 보호자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해 보여 주십시오’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못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단에 ‘아동학대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은 좀 너무 작위적인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정말…… 지금 차관님이 말한 부분이요,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 김남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실제 커뮤니티에서도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조사하려고 하는 현장 경찰관이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부해 가지고 고소·고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못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을 겪었다라는 그것을 호소하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실제로는 안 되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저는 똑같은 걸 준다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고요. 다만 7항을 넣으면 됐지 8항을 넣는 것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7항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빼야 됩니다. 수사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무리 법치주의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좀 곤란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게 지금 11조에 현장출동 규정이 있어서 그 관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이나 전담공무원은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사실 이 조항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겠지만-게다가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또 출입할 수 있고, 지금 여기 7항을 넣는 것은 아마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집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라 제삼자의 어떤 장소에까지도 들어간다는 의미가 더 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

말로 공무원에게까지 열어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한나라고 하면 경찰관인데 경찰관은 이미 다른 규정으로 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찰청 차장님, 그 현장에 있는 경찰관분들이 이 조항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요, 지금?

경찰청차장 송민헌



예, 뭐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분리라든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직권 남용죄로 상당 부분 지금 형사고소 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인해서 상당히 좀 단일 건으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더더욱 소극적으로 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처벌법에 조금 더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 그걸로 인해서 지침을 좀 더 세부화해서 현장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 양식은 어떻더라도 선언적으로 넣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7항을 사법경찰관 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찬성의견입니다. 8항은 좀 불필요해 보이고요.

경찰청차장 송민헌



저희 경찰청도 일단은 7항이 우선입니다. 주거침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직법 제7조로 해서 해석하면 자칫하면 주거침입죄로 피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제12조제7항 부분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더라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직무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일단 8항은 빼고요. 그리고 7항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빼고 사법경찰관은 출입할 수 있는 걸로 그것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남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예, 알겠습니다.

# R&B Report

## III.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1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5.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1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 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290호



박주민

선 거 구 서울 은평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1대)  
소 속 위 원 회 법제사법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b>접수</b>	2020.11.12.	제안
<b>소위원회</b>	2020.11.26.	상정/ 축조심사
	2020.12.24.	상정/ 축조심사
	2020.12.29.	상정/ 축조심사
	2020.12.30.	상정/ 축조심사
	2021.01.05.	상정/ 축조심사
	2021.01.06.	상정/ 축조심사
	2021.01.0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b>상임위원회</b>	2021.01.08.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연간 노동자 사망 수는 연 2400여명, 하루 7명에 달하는 것이 현실임.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삼표시멘트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폐자재 재활용품 파쇄기 사망 사고 등의 산재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은 지난 수십 년간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위와 같은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조직적·제도적 안전조치가 설계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이에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기관 또는 법인이 소유, 운영, 관리하거나 발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 관리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제3자 또는 수탁자와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에 이룸(안 제6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7조).
-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소유,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교통시설에서의 공중 위험의 발생 방지 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 바.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함(안 제11조).
- 사. 이외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처벌사실 등의 공표,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처벌 특례 등의 내용을 규정함.

주요발언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기본적 입장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결론과 같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몇 단계로 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요지가 생명안전 업무에 관한, 생명안전에 관한 것을 주요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는 단계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단축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애초에 여러 분야를 많이 줄여 놔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축소가 됐고, 그렇더라도 바로 시행하는 것은 또 형량이 굉장히 높아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유예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쪽 입장은 대략 어떤가요? 법무부차관님이 정부 쪽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저희들이 부처 의견을 들을 때 만들어진 부처협의안이 일단 기초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차관님의 의견이 결국은 정부 쪽의 대표적인 의견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략 4년보다는 좀 줄여서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시행을 1년 후에 하나까 1년 유예 정도가 적절할까요, 어떻게? 정부 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정한 기준이 좀 있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렇지는 않아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예. 지금 중기부차관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아무튼 입장들이 좀 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이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의 문제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부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어떻게 할지는 부처 의견이 좀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시고 거기서 논의

가 되어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부처협의안으로 먼저 내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게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그 당시에는 또?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아닙니다. 부처협의안 작성 시점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안이 당초 2단계이고 저희들 통상적인 노동법이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부처 협의에 임해서 실무적으로는 한 단계를 더 넣을 수도 있고 100인이냐 300인이냐 하는 문제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법안소위를 준비하면서 내부 실무자들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토론했던 결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론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규모에 따라서 관리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반대의 측면에서 이게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고 또 재해의 빈도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단계를 너무 많이 나누거나 기간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하는 부분은 좀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16조 앞 조에 나와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쨌든 고용노동부도 이것을 300인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지는 않아요도 된다는 입장을 하신 거고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래서 어제 제가 모두에서도,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부처협의안이 저희 안으로 알려지면서 3단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논의의 출발점이 될까 봐 애초에 제가 먼저 모두에서 '그렇지는 않다. 논의의 출발점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용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중기부차관님도 마찬가지고-법무부도 그렇고 어쨌든 일정 정도 유예를 두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지는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는 없으신 거지요?

중기부차관님도 그러시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



예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박주민 위원님 일정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애초의 박주민 위원님 안보다는 좀 줄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들께서 협의해서 가지고 정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실 저희가 이 법을 심사하면서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체 그리고 또 소

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은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전대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항도 넣었고 어제 얘기하기도 정부 지원정책은 바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부처에 맡겨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안을 기본으로 해서 2년 정도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조의 3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안전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한 것에 해당 상임위에 반기별로 보고를 한다는 조항을 넣고요, 유예기간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고용부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저희들이 이 법을 심사하면서 줄곧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은 정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둡니다. 두는데, 지금 이 법의 시행이 시급하다 또 유예기간을 단축해도 정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

는 의지를 표명했던 말입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렇다면 저희들이 백혜련 간사님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주관이 되어서 안전조치·보건조치 관련해서 영세업체부터 대기업까지 총망라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 법이 시행되고 특정 분야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발효가 될 때는 안전사고 제로인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정부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의지가 담겨야 돼요, 차관님.

바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제안을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또 사각지대 없는 산업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소관 상임위원 환경노동위원회에 6개월에 한 번씩 추진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고, 또 이 시스템화가 완료되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환노위에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그 원인이 뭔지, 대책은 뭔지, 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줬는지 이런 상황 등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국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위원장님,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 법에 꼭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3항에 해 가지고 하고 그 지구 정리는 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입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는 사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간사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국토부 소관 사항을 환경노동위원회에 보고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그냥 다 맡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위원님 그런 점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일단 보고가 필요한 것은, 시민재해 파트는 너무 많은 파트라 사실 해당 상임위 보고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산업재해……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산업재해 부분만이라도 특정해서……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산업재해에 특정해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고용노동부차관님, 이게 지원은 바로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등의 지원도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러 부서에 나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조문을 만들었지만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총괄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소관 법률이 있고 이 법이 있는데 저희가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진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거나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아니, 보고하는 것은 환노위에서 양해…… 보고받는 건데.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일단 고용노동부는 산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러나 이게 지금 결국은 시행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쭙보는 건데요.

재해가 발생을 하면 엄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특히 자체적으로 안전이나 보건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일단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리고 그게 또 이루어져야 저희가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것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몇 년을 지금 더 유예를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산업재해만 한정해서 보면 1년 정도면 상당히,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행될 수 있다고 보seyo?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중대산업재해 부분은 사실은 1년 뒤에는 50인 이상 기업 위주로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연간 1000억 규모로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은 수많은 사업장의 시설 개선이나 장비 구매를 위해서 1000억 가지는 못 합니다. 결국은 선택적으로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그렇게 해 왔고.

다만 올해 집행할 예산으로는 저희가 안전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지는 취지에서 한 4000억 규모로 늘렸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늘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복지부의 무슨, 어제도 보니까 그런 시설들도 많고 한데 그 각각의 조치는 각 부처가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올해는 지금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 시점에 그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시급하다면 그런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부처의 예비비가 있을 수도 있고,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예기간을 원래 대로 늘릴 수밖에 없어요.

차관님, 이렇게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의 예방’ 뭐 쪽 이렇게 조치하고 관리·감독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쪽으로 하고……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고한다고 하시던……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정부는'이라고 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또 문체부, 국토부, 뭐 복지부도 있을 수 있고 교육부도 있고 그렇게 하면 통합이 되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그러면 저희들 부담은 좀 더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부담 더는 게 아니고 빈틈이 없겠냐고, 부담도 덜고 빈틈이 없겠냐고.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법무부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입니다.

고용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외에, 지금 다른 부처 관계자분들 나와 계시지만 다른 부처들은 그 부처 간을 뛰어넘는 일종의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시민 재해 예방과 안전을 준비하기 위한 별도의 컨트롤타워는 임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 법무부가 지금 이 법의 주무부처니까요 저희가 책임지고 주무 관서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 시기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그건 정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법무부가 법사위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그건 너무 월권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정부와…… 저희는 처벌 사항이나 법사위와 관련된 것은 보고받을 수 있지만 예방 활동과 관련된 것을 법사위가 보고받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전문위원님, 자구 정리해 가지고 '정부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허병조

예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아까 그러면 송 위원님은 의견이 어떻게 되신 거였어요?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나는 맡긴 거예요,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박 위원님은 4년으로 쓰셨잖아요, 4년.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제가 2년 정도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어제 다시 2년을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2년.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좀 줄였으면 좋겠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글쎄, 지금…… 아니, 송기현 위원님. 우리가 지금 유예기간을 조금 단축하고 이렇게 애를 써보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차관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의지가 지금……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저희가 여당으로서 잘 챙기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는 분명히 하신다니까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니까, 예산 문제.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예산이야 예비비를 써도 되고 뭐 의지가 있으면 다 하지.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의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줄인다고 한다면, 유예기간을 줄일 때는 안전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 담보를 한다는 전제하에 줄이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차관님께서도 '해썬보겠습니다'라는 답을 딱 하고 끝난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용노동부차관 말씀은, 차관님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처에 관련된 것까지도 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부처간에서는 월권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고용부차관이 다른 부처에 있는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이런 취지이지 확실하게 산업재해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오늘 환경부나 다른 부처는 지금 출석을 안 하신 거지요?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늘도 하셨지요. 안 했나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어제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만 참석하셨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바로 확인이 어렵네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16조 3항으로 해서 정부부처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반기별로 보고하는 조항을 넣도록 하고요.

시행일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아니지, 아니지. 발효 후 2년이지.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그대로 있고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러니까 발효부터 2년이지.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되는 거지요. '다만 이 법 시행 당시에……' 공포 후 2년이 경과, 그러니까 결국 3년입니다, 3년.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2년이지요, 2년. 결국 2년입니다. 공포 후 2년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아, 공포 후 2년이 경과……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1년, 2년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이 법 시행 당시에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되니까 토털 3년이지요, 공포 후로부터.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지요, 공포 후 2년입니다.

김남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포 후 2년이니까, 1년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아니, 박주민 의원안에서 지금 2년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것을 2년으로 만들자는 거지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박주민 의원안에 의하면 이 법 시행으로부터……아, 공포 후 4년이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얘기를 했었던 건데……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공포'를 '시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간사님도 1 플러스 2로 말씀을 하셔서……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렇지.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예, 공포 후 2년이 되는 겁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1 플러스 2로 그 정도 하시지요, 왜냐하면 50인 이상은 바로 1년 후에 시행 되는 거니까.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헛갈리니까 그냥 1년, 3년 그렇게는 안 됩니까?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이게 조금 달라지네요, 간사님 말씀이랑.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사실은 사전 회의 때 백간사님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50인 미만 4년, 50~100인은 2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50인 미만 2년, 그것도 이제 공포 후 1년 뒤에 발효가 되고 그 때부터 4년, 2년 돼 있는 것을 2년, 1년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쪽 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시행 후 2년 지나고 시행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냥 4년을 3년으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1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저도 이것 사실은 착각을 했네요.

지금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3항을 넣고 이런 담보가 된다면 50인 미만 2년만 하자, 그러면 1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 간사님하고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회의에 들어왔지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냥 공포 후 3년으로 하는 게 제일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 후 2년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리고 해당되는 50인 미만 사업도 시행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1년 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일의 1년 뒤에 50인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가 얼마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2년의 준비 기간을 둔다,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2 해서 공포를 기준으로 하면 3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저도 이게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이후 4년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2년인 거지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렇지요. 1 플러스 2, 50인 미만만 2년.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렇게 자주 정리하세요, 전문위원.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두 분이 어떻게 합의를 보신 건가요? 얘기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자구 정리와 관련해서 저희들 어제 말씀드렸듯 50인 미만으로 할 경우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의 공사, 팔호해서.....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팔호 넣으면 돼요, 그것은.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매출액, 수주액?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공사 실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공사 실적 50인 미만의 공사.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공사 실적이라고 정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나름?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예, 다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기타 또 지금 성안된 곳에서 특별하게 고질 부분이 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



위원장님, 중기부 한 말씀만, 정리를 하셨지만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릴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



시행일 관련해서 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셨지만 입장을 말씀을.....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아니,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을 말씀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존중을 하고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강성천



다만 업계에서는 사실은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50인 미만에 대해서 3년을 주셨지만 50인을 초과하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으로서는 매우 부족하다, 1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소위에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로서는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관계부처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도읍 간사님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마는 관계부처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 중기부도 산업안전 주무부처는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교육·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소관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님, 저도 의견 차원에서.....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사실 저는 어제부터 계속 2년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마지노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간사님들끼리 그렇게 정 하셨고 더 이상 논의해도 아마 이게 수정 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어려운 점과 한계 점 그다음에 부처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일응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저는 고용노동부차관님이나 관계 부처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 법을 빨리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 주셨으면 어떻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 말씀 남깁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빠르게 보시고요. 1조(목적), 특별하게 문 제없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사소한 것 좀 말씀드리겠 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졌 기 때문에 공무원-지금 밑줄 그어 놨는데-이건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령 자체가 처벌에 관한 게 아닌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처벌 외에도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처벌 다음에 '등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경영책임자의 개념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공기업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장 이나 자치단체장이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는 거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이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딱 다가가는, 공무원은 배제되는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넣는 것이 오히려 더 명쾌하지 않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저도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우리가 경영책임자의 개념에, 그러니까 지방행정 기관이랑 중앙행정기관장을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무원 처벌 특례 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특정 인허가와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 특례 를 상정해서 공무원이 지금 들어간 건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제 논의가 충분히 됐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노정이 돼서 우리가 삭제할 한 상태니까 이게 이 법을 넣으면 공무원 자체를 처벌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목적은 그렇게 되는데 내용은 그게 없는 형태로 인식이 되면 오히려 법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으니 차라리 이것은 법원행정처 의견이 오히려 목적과 내

용을 일치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의견대로 가시는 게.

지금 목적에는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논의 다 해 가지고 이 문제 점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조항을 삭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법안이 나가면 공무원 처벌한다는 규정 결국 삭제했다는 것 가지고 또 시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불 필요하게.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것…… 공무원을 특별하게 빼서 공무원을 처벌하는 공무원 처벌에 대한 특례 조항이 폐지되는 거지 공무원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경영책임자의 개념에 사실은 다수의 공무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경영책임자로 그래서……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그것은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한 것이지 경영책임자라는 개념에 일반적으로, 목적 조항은 사실 경영책임 자등이라는 정의 규정이 있기 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경영책임자에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이 포함된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할 것 같거든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공무원하고요 경영책임자 등에서 정한 것은 공무원 은 그냥 딱 보면 일반공무원처럼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영책임자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행정기관의 장, 자 치기관의 장, 아예 기관장들만 하고 있어서 공무원으로 하면 좀 너무 포괄, 너무 넓어진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고 행정기관장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바꾸면 몰라도요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목적에 차라리 '경영책임 자등 및 법인의 처벌'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과 목적을 일치시키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차장님 생각, 의견이 어떠세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우리가 제목 자체도 '중대 재해 처벌 등' 또는 '중대 재해 법인 처벌 등' 이렇게 해서……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경영책임자등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아니, 그것은 맞지 않지요. 왜 그러나 하면 경영책임자등이라는 개념 정의를 나중에 목적 이후에 저희가 개념 정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 벌써 경영책임자등이라는……

법무부차관 이용구



공무원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경영책임자 넣는 것은 '등'으로 포섭되지 않는 경영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냥 두시는 것이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냥 두지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위원장님 뜻대로 하세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제가 볼 때는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아니,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이라고 되어 있거든.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처벌 등, '등'은 넣고요. 아까 차장님이 말한 것처럼 '처벌 등'을 이렇게 '등'자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렇게 하시든지.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무원은 넣고요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2조 문제없고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2조 문제없고요. 2조가 정의 규정입니다. 죽 다 한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3조 문제없고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3조와 관련해서요. 지금 언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관련해서 잘못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3조(적용범위)에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5명 미만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가 원인이 있고 더 큰 업체가 있을 경우는 그 업체의 경영책임자에게는 이 중대산업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아직 우리가 2조도 지금 못 읽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시나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아까 간사님이 2조 문제없고 3조 문제없고 말씀하셔서……

(웃음소리)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우리 고친 것을 전문위원님이 딱딱 지적해 주세요. 어제 고쳐 가지고 더 한 것을.

전문위원 허병조

어제 고친 것 말씀하시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렇지요, 어제 고친 게 최종적인 거니까.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중이용업소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러니까 3페이지 상단에요 면적 제한 조항도 동시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렇게 했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것은 그렇게 결정됐었습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제 고친 부분 적시를……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지금 벌써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 법안 성안 작업을 한 거라서, 어제 우리가 고친 것 뭐를……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하도 많이 손을 대서 매일 헛갈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 고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하나씩 읽어 가면서 물어볼게요.

2조 5호 공중교통수단에서 우리 고친 게 여객자동차 라목의 시외버스만 들어가는 것 맞나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그것 맞고요. 그리고 나목의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2조 나목? 5호? 5호예요 나목이에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나목이요. 그것 들어갔고요. 다목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거였고요. 그냥 원래대로 가자, 3조 1호 라목만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마목에서 뺐지요. 항공 전용 그 부분은 불특정다수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항공기라고 해 가지고 뺐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적용범위를 단서로 안 넣고 3조로 집어넣었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적용범위를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되는 건데 형식을 따져 보니까 이렇게 넣는 게 제일 낫겠다라고요. 그래서 산업재해 파트로 해서 넣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이것도 좀 바꾸지 않았어요? '종사자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를 생명 신체 이런 식으로 바꾼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몇 조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4조.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4조요? 그것은 그렇게 바꾸시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고용노동부에서 좀 다른 의견을 내서 그것으로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4호는 고용노동부가 갖고 온 문구대로 바뀐 게 맞습니다. 관리상의 조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학진



2항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논의된 바대로 1항 4호도 바뀌었고요 2항이 추가됐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저게 달렸나요? 중대시민재해는 그게……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차관님이랑 차장님, 4조의 의무 규정이 결국은 경영 책임자의 의무 규정으로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해야 될 텐데 한번 죽 보시고 특히 1:2:3호까지는 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4호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할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더 이상 더 특정한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4호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되는 의무가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상의 조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이용구 4호 규정이 많은 고민이 담긴 규정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규정을 못 한다라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더 구체화되면 이것은…… 아무튼 여러 가지 논의들을 충분히 지켜보셨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이 4호를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부분을 정이 것밖에 안 된다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부분?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이것 이렇게 안 해 놓으면 관리상의 조치를……

법무부차관 이용구



당초에 법무부 의견은 그랬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의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하면 어떨까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관리상의 조치' 이것은 어떤가요?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점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 외에도 준비하거나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니까 필요가 더 적절하겠지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이게 지금 대상이 되는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가장 큰 불안이 해야 될 의무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 요청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거기에 한다면 1호하고 4호 그렇게 해 봐야 되겠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것을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단 하나라도 안 하는 것이……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2호나 3호는 재발방지 대책이나 또는 관계 법령의 명령이 내려와서 이행하는 것 자체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 지거든요.

그런데 1호는 일단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이행 능력에 따른 문제가 하나 있고 4호는 관리상의 조치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것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사항이라서 이것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1호 4호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의무 범위, 의무 자체를 특정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위원님 의견처럼 그렇게 하시면……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전에도 원래 정부안에 서 다 대통령령으로 가져왔는데 그때는 이런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다 4호까지, 제1호와 4호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겠습니까.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예.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어떠신가요, 차관님이랑 차장님?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래 입장이 그렇다니까.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래 입장이 그러셨어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런데 그때는 내용이 많이 달랐지.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어제 가져온 거라 다르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4호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특별히 지적하실 부분 있나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없고 5조는 어제 박주민 의원안 대로 정리가 된 거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박주민 위원님이 수정한 안으로 고쳤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뭐 사소한 건데 5조 제목을 '도급 및 위탁관계' 이렇게 하지 말고 본문에 나와있듯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이렇게 좀 통일되게 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제목이 '확보의무의 귀속' 이게 무슨 말이야?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귀속을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러니까 '도급, 확보의무' 이렇게 가아지.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귀속을 빼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러니까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도급 등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

김용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하나로만.....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본문에 돼 있는 대로 통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문 위원님, 6조 2항은.....

전문위원 허병조

예.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됐어, 됐어.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6조 문제없지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예.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7조…… 7조, 8조는 뭐 특별한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더불어민주당)



9조 4항도 같이 바꿔야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3항이요?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9조가 1항하고 2항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장비와 장소 사이에 콤마가……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9조 4항.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박주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1항하고 2항이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9조 4항을 같이 바꿔야지.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중요하지.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1항은 제조물이고요 2항은……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알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아, 중대시민재해요? 거기 제조물이고 그다음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3항의 시설, 장비, 장소 사이에 콤마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이게 3항이 새로 들어간 거지요, 9조 3항이?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제1항 1호~4호 및 2항 1호~4호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어디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9조 3항이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어디를 바꿔야 된다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3항에 시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예.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새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원래 박주민 의원안에서 그 문구를 바꾼 부분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5조에 대응하는 조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런데 이게 9조 2항까지 논의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9조 3항이 또 들어와 가지고.

송기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3항이 이제 박주민 의원안에는 다른 조에 돼 있었는데 다른 조에 들어가 있던 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들어간 거지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어제 그게 논의됐나, 우리?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다 그때 논의했습니다. 다 똑같은 형태로,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같은 형태로……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어제 수정안을 내시진 않았어요. 어제 수정안은 원안 4항에 대해서만 냈고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중대시민재해에 같이 일종의 준용하는 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13조가 새로 들어온 거지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13조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국회 보고하는 것에 준해서 보면 이게 지금 중대재해라는 게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지요, 차관님? 차관님, 이것도 그냥 '정부' 해 가지고 '공표할 수 있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까? 고용부차관님, 어때요?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정부 역할에 관한 16조의 예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 부처가 정기적으로 할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 현재까지 또 통계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산업재해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산업안전법을 준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너무 부처 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오히려 더 안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로 제목을 바꾸고요 그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박화진



내용은 산업재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만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그 조 이름은요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렇게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이것 좀 앞부분인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 좀 여쭙보겠는데요. 9조를 보면……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몇 조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9조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라고 되어 있고 '결함으로 인한 이 사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차장님, 그 밖의 사람이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통은 사용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일반 시민. 이용자가 아닌 일반 시민.

법무부차관 이용구



교통수단의 이용자만이 아니라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가령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 뜻은.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그러니까 뭐 차량 정비를 전혀 안 해 가지고요 브레이크가 파열됐는데 인도로 돌진해서 일반 시민, 보행자를 쳤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차에 탄 사람은 이용자가 되는 거고 보행자는 그 밖의 사람으로 가는 거고.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예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제목이 동일하나요?  
16조 3항만 좀 추가해서 지금 빠르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아, 16조 3항도……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부칙 고친 것 다시 한번…… 그것 2개만 빨리 정리하시면 되겠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16조 3항은 한번 읽어 봐주세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3항은 불러드릴게요.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 이행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런데 역할 이행상황……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병조

예.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것은 조금 생경하다.

전문위원 허병조

16조 제목 자체가 '정부의 역할'로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래도 정부의 역할을 뭐 책무로 하든지 역할 이행 이게 조금……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아니, 법원행정처 차장님한테……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냥 역할을 빼면 돼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행상황 및……'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조치 이행.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상황 및.'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조치 이행?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렇게 하든지.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또 오히려 반복인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이게 제목도 안 맞고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래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중대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이라고 해야……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16조 제목도 '정부의 사업 주 등에 대한 지원'……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지원 및 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래그래.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지원 및 보고.'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리고 뭐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1항 1호를 보면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이래 가지고 마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정부가 발생 원인 분석하고 사후적으로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항 1호를 중대재해의……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에 대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아니, '중대재해의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재해 발생원인의 분석.' 그러니까 발생원인 분석을 뒤로 빼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저희들이 쪽 논의 하면서 정부와의 선제적 예방과 시스템화에 좀 맞지 않겠나.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발생원인 분석' 지금 이 조문의 취지가 결국은 역량이 안 되는 사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규정을 만들어서 했으니까 중대재해 발생원인 분석 자체는 사후적 조치니까 차라리 빼 버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아니, 이제 발생원인 분석도 해야 그다음에 또 사후적으로라도 또 대책이 나오니까 넣어 놓고.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예, 그러면 그것 좀 문구 조정을 하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그러면 앞뒤를 바꾸지요.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게……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시행일과 관련 해서요 박주민 의원안에서 보면 이것 우리가 원래 했었는데 괄호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이것은 그 앞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것은 안 맞지요, 예.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여기 어떻게 고쳤는지 다시 한번 읽어 봐 주세요, 부직.

전문위원 허병조

제가 읽을까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예,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정리해 보시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다음에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 50억 원 미만은 괄호로 처리하고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어디다가?

전문위원 허병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그다음에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 50억 미만 그것은 노동부와 해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오케이.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됐지요?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다음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아, 참 그것 그래. 들어가 있냐?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들어가 있어.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제일 중요한 건데.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럼 이것 이제 최종안 안 하고 이 상태로 의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의결하고.....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프린트물 다시 안 보고?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자구 심사는 만약에 한다면 저한테, 세밀한 자구 심사는 위원장한테.....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그러면 마지막이라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작년 4월에 이전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그때 후보자 신분으로 유족들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때 유족들의 말씀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나 여당 또 야당 할 것 없이 나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 더욱더 산업현장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의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더 촉구할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기반을 닦게 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심히 심사를 해 주신 관계부처 기관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인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또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산업재해의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우리나라의 기이한 도급제도가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원청업체가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다 하청을 하는 이런 구조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제도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아려다 보니까 하청업체는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안전이나 보건 책임자를 두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법조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례들이 법원에 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도 필요하지만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법안이 만들어진 이상 기이한 도급제도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법안을 발의하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님이나 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바람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동전의 양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가해자의 신분이 될 수 있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은 근로자분들도 굉장히 미흡한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공공기관이나 또 기관장분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불만도 굉장히 큰 것이고 이 양극의 갈등에서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5월째 이 법안을 열심히 심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들 미흡한 생각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지만 첫 단추를 꿰만큼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잘 발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큰 시민재해나 산업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첫 삽을 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드릴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먼저 정부 측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이 법안을 성안하면서 경험을 하셨지만 개개의 법률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을 하나씩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을 하나의 법률로 입법을 하면서 굉장한 혼란이 왔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 측 각각 주무부처에서 TF가 만들어져서 각각의 분야에서 어쨌거나 그 부분을 강조할 분야, 더 가중처벌 할 부분을 찾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로 종합적인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완결성이 높은 법안으로 갖어야 하는 그런 구조에서 갑자기 이게 하나의 법률, 몇 개 안 되는 조문으로 그걸 모두 포괄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가 5일이라는 긴 시간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말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정부 측에서 어쨌거나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런 TF를 만들어서 정부 측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셨으면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했지만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 정말 책임을 좀 통감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칙 규정을 할 때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보건 및 안전 조치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말 제대로 점검을 해서 산업계에서 이 법에 의해서 부과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과된 의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신속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경우는 드문데 민주당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 소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정기 국회 때 수많은 관계된 법률이 날치기로 통과가 됐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북한에도 없는 기립표결도 이루어졌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으로는 더 이상 법안소위에 내가 참여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들었고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초안을 보는 순간 이것 참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를 한 겁니다. 헌법상의 원칙, 사유재산권, 책임주의, 과잉금지…… 모든 법체계에서 제가 단 하나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로 인한 충격은 대한민국…… 이 법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그렇기에 며칠간의 여러 고민 끝에 이 법안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법을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담을 수 없는 이 법을 날짜를 딱 정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통제조차 없이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놔줍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은 정말 치밀하고 또 고민하고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의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과정에서 법안이 나왔는데 향후에는 적어도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들어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또 우리가 단 점 하나에 대해서도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국회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이 법안의 성안에 참여를 하고 논의를 했지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부작용들이 사회에 속출할지, 그러면 결국은 이 법안을 만든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결이 되고 하겠지만 이 법사위 소위라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게이트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좀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 이념을 떠나고 다수당, 소수당을 떠나서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민주당 위원님들께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저도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법을 가지고 5일간이나 심사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법이 갖는 여러 가지 중대한 의미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남다른 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체계자구와 관련한 고쳐야 될 소소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이 법을 하는 데 왜 굳이 5일간 야당을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참 궁금하기도 한데 앞으로, 김용민 위원님이나 감남국 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토론을 하다 보면 보다 더 완성도 높은 법안도 나올 수도 있고, 국회가 21대 들어와서도 그렇고 20대 때도 그렇고 날치기 이런 논란에서 이제 벗어나서 적어도 법사위는 1소위든 2소위든……

2소위도 보십시오. 전체위에서 2소위 회부 안 하고 남친 법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해서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독자적으로 날치기 오명을 받지 마시고 좀 머리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법사위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타 상임위에서 사실 '왕된 노릇한다' 비난을 많이 받지요. 그런데 심사하면서 보십시오. 1소위·2소위 소위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 소위 회부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2소위 법률도.

향후 윤호중 위원장님께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안 심사만큼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다수당 횡포 부리지 마시고 이제 날치기 하지 마시고 머리 맞대고 심사하는 이런 법사위 전통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예, 새겨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야당……

김도읍 위원 (국민의힘)



실천을 하셔야지 새겨만 들으면 어떡하나.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그러지 말자며.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헌 위원 (더불어민주당)



뭘 새겨들어 새겨들기는.

송기헌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해 왔다고.

유상범 위원 (국민의힘)



새겨들어야지, 그럼.

소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도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송기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래도 그렇게 해 왔어, 여태까지.

송기헌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니, 나는 안해.

# R&B Report

## IV. 국회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 통과 법률안 목록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4.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73호



박홍근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정당 더불어민주당  
당선횟수 3선(19대, 20대, 21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 진행 경과

- 접수**  
2020.10.08. 제안  
2020.11.19.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2020.12.03. 상임위 상정/  
대체토론/  
소위회부
- 소위원회**  
2020.12.2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상임위원회**  
2020.12.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2021.01.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수정가결)
- 본회의**  
2021.01.08. 수정가결

## 제안이유

전자상거래의 발달 등으로 택배 등 배송시장 규모가 2009년 2.7조원 에서 2019년 6.3조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8.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기존 법령에 함께 규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울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인 만큼, 서비스 품질이 높고 근로 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증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택배, 소화물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안 제5조 및 제6조)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영위토록 함.
- 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안 제7조 및 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손해 배상 연대책임과 함께 영업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다.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안 제9조 및 제10조)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하도록 함.
- 라.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안 제15조)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함.

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의 도입(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육성 및 우선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9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산업 육성, 연구개발 촉진, 시설·장비 확충, 고용·창업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구성·운영(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음.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안 제21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 및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설·장비 확충·개선, 종사자 안전시설 설치, 연구개발, 효율화 컨설팅, 교육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과 함께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카.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특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건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시설확충을 위한 도시·군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타.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약관의 근거 마련(안 제31조 및 제3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상호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 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한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파.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안 제33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화주나 다른 사업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아닌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함.

하. 생활물류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안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거.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안 제35조 및 제38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이상 기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너.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안 제39조에서 제41조까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산업의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협동조직을 통해 상호 지원하고 운송사고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관계기관의견

한국통합물류협회

제정안은 택배종사자, 업계 및 부처 간 장시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발의된 법안이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퀵서비스업이 택배서비스와 구분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로 영세하여 규제보다 지원방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퀵서비스 산업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므로 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 등 생활물류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 법안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 서비스 질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법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별도입법을 반대하면서, ①대부분의 화물운송형태가 ‘집화·포장·분류·배송’ 과정을 거쳐 일반물류와 생활물류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우리나라의 협소한 화물운송시장에 일반물류와 생활물류 양자를 구분하는 법률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하고, ②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자가용화물차 등 모든 운송수단을 제한 없이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화물차 등 운송수단의 공급과잉을 초래하여 화물차운전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③기존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의 분할, 소규모화로 공제사업 등의 사업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거로 들고 있음. 이에 택배 및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은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을 근간으로 하여 개정·반영하여야 하며, 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

법 제정 목적이 택배,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되고,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안전,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임. 한편, 화물업계 의견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공급 등 화물운송시장 관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할 계획으로, 제정법을 통해 증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

택배 등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제정에 동의하나, 제정안 중 소화물배송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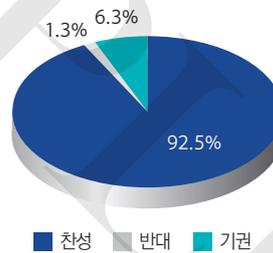
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실과 법적 규율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손해배상연대책임(안 제7조)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이용제한(안 제15조, 제48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역무는 「우편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보편적 서비스이자 공공 필수역무 대상으로서 「우편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0. 10. 08 / 2021. 01. 08
- 발의자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3인
- 표결의원 : 재석 239인 / 제적 300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39인(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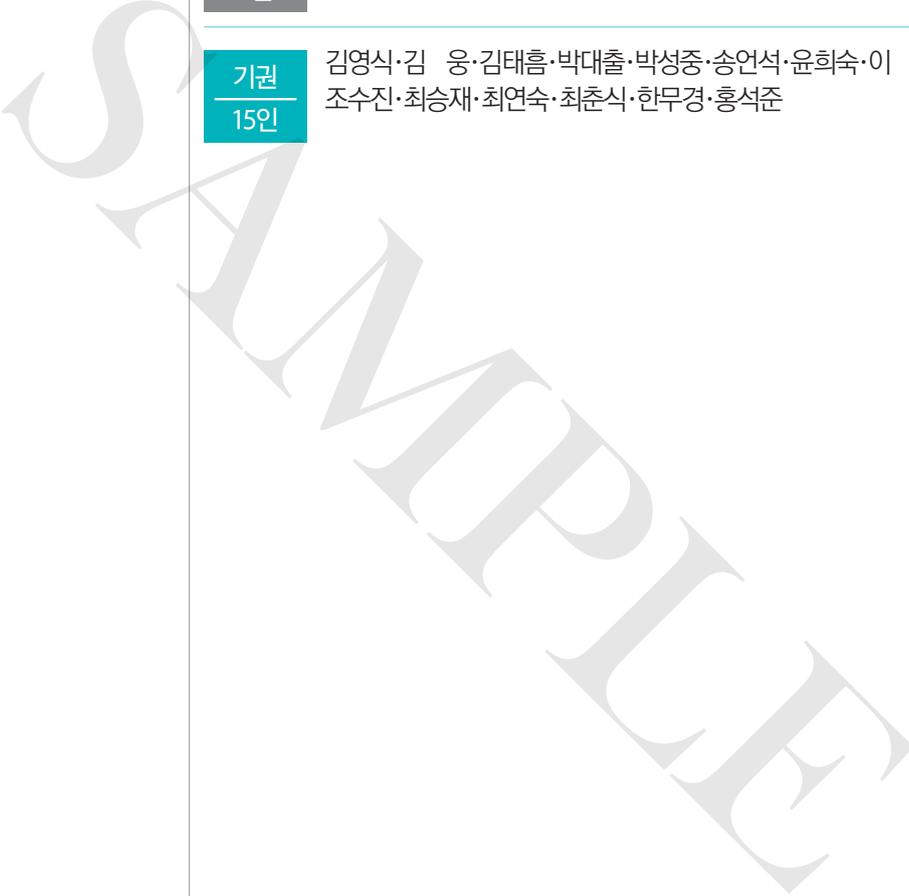
**의원별 정보**

- 찬성 221인**
- 강대식·강득구·강민국·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구자근·권성동·권인숙·권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홍·김남국·김도읍·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예지·김용민·김용판·김원이·김윤덕·김정재·김정호·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형동·김회재·김희곤·노웅래·도종환·류성걸·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대수·박병석·박상혁·박성민·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진·박찬대·박형수·박홍근·배준영·배현진·백종현·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범수·서병수·서삼석·서영교·서영석·서일준·설훈·성일종·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현·송석준·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원식·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병길·안호영·양경숙·양금희·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엄태영·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상범·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석·윤영찬·윤재갑

윤주경·윤준병·윤창현·윤희중·윤후덕·이개호·이규민·이달곤·이동주·  
 이만희·이명수·이상현·이성만·이수진·이수진·이 용·이용빈·이용선·  
 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종배·이종성·  
 이주환·이채익·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현승·이형석·인재근·임오경·  
 임이자·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용기·전재수·전주혜·  
 전해숙·정동만·정성호·정운천·정일영·정찬민·정청래·정춘숙·정태호·  
 정희용·조명희·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조정훈·조태용·지성호·  
 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형두·최혜영·  
 추경호·태영호·하영제·한기호·한병도·한준호·허 영·허은아·허종식·  
 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반대**  
3인 김희국·용혜인·윤두현

**기권**  
15인 김영식·김 용·김태흠·박대출·박성중·송언석·윤희숙·이 영·정경희·  
 조수진·최승재·최연숙·최춘식·한무경·홍석준



안건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의안번호 제2107249호

### 심사 진행 경과

#### 상임위원회

2021.01.08. 제안

#### 본회의

2021.01.08. 원안가결

### 제안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15조).
- 사.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6조).

국회본회의  
국회본회의  
국회본회의

주요발언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백혜련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이탄희·박병계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안,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합 조정한 법입니다.

일단 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기업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의 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 부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처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방의 부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이 법의 입법취지인 원·하청 관계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없던 것으로 원청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도 경영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예방 효과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학교, 5인 미만 사업주 등은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되 원청의 책임을 여전히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 등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없애고 법의 취지와 목적은 살렸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 없던 정부의 지원규정을 신설했는데 중소기업 등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그 차원에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 유예기간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 그 이상의 기업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법사위만 5년째 하고 있는데 여섯 차례의 소위, 한 차례의 공청회 등 1개의 법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심사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정법이라 양도 많고 비교대상도 없었고 논쟁 지점들이 많아서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려웠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계·소상공인연합회·시도지사협회·전국시군구협의회를 비롯하여 교육부·산업부·중기부·국토부·환경부·공정위·소방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다 들으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 노사가 모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이 법은 어느 한 계층에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영세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대기업 등 정말 다양한 계층,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모두가 100% 만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계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사망률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매해 2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노동계 역시 이 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

서 제외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경영책임자로서의 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을 받고 원청에 해당되는 경영책임자는 이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이 중대재해법에서 완전히 적용이 배제된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됐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을 보시면 제2장 중대산업재해 파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단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보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모든 이 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서 대기업 등의 원청 기업은 빠져나가고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의무를 다한 기업에 대한 면책조항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면책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다한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에 규정한 안전보건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곳에서 시민 대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고쳐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재해가 좀 더 적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게 하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아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부디 이런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의장 박병석



백혜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여섯분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이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정의당이 제출한 최초 안에 비해서 심각한 독소조항이 많이 빠진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긴급 법안을 만들어 내는 우리 국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여론의 이목을 끄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됩니다. 또 각종 사회·시민단체에서 법 개정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전방위적인 입법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안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듣고 이것을 숙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관행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법안의 경우 5년 내지 10년 동안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는 데 비해서 우

리나라는 한두 달 만에 똑딱 만들어 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위헌판결이 십수 건씩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엄벌주의로 나가서 산업재해가 줄어든다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왜 이 쉬운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살인죄가 지금 5년 이상인데 10년 이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살인 범죄가 줄어들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양형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지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지면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근로자가 보호된다는 이런 단일한 인식이 이 법의 탄생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는 고의법과 과실법을 구분하고 있고 고의법을 과실법보다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과실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 이상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수많은 고의법보다도 과실법에 불과한 이 산업재해사범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과도한 처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은 우리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1군 건설업체 예를 들어 봅시다. 전국에 수백 개의 현장이 있고 하나의 현장에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일을 합니다. 그 하청업체 한 곳에서 사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법에 따르면 1군 건설업체, 원청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1군 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수천 개의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 합니까? 결국은 무과실 책임을 묻는 겁

니다. 결국은 원청회사 대표이사한테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신적인 능력을 전제로 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법은 법 적용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피해자의 보호 못지않게 적용 대상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기대 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5인 이하 사업장 폐지했지요?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이 종업원이 많고 큰 기업만 골라서 발생합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나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나 죽음이라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 억울한 죽음, 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인 미만의 기업은 실손해만 배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죽음도 대기업 근로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중을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민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무조건적인 처벌과 형량 강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의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법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과잉입법이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혹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지 않을지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본회의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장 박병석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1700만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며 만들고자 했던 세상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조정 과정이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3년을 두고 있고 심지어는 안전진담 책임임원을 두어서 대표경영자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장치까지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칫하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다시 재연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이 건물 바로 앞에서 2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용균 어머니, 이한빛 아버님을 보러 오가면서 박병석 의장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그분들께 위로와 약속을 다짐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수많은 의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다시는 용균이나 한빛 씨 같은 불행한 이들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결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계에 끼고 작업하다 추락하고 출근하다 덤프트럭에 깔려 죽은 노동자들이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구의역 김 군, 김용균 서부발전 노동

자,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 포스코 노동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그리고 신문에 단 한 줄도 나지 않은 채 죽어간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없었다면 이들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입니다.

경제와 기업 부담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런 고려와 결코 맞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업인들조차 이 법안과 관련해서 경제 충격을 말할 뿐이지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도 경제를 걱정하는 어떤 기업인도 자기 자식이 일하다 죽는다면 속도를 조절하자거나 유예기간을 두자거나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최소한 17만 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대표하고 있는 그 17만 명 속에는 안전비용 절감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사람보다 안전비용 절감으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대표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표를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준다며 아이 낳으라고 온 나라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한 해에 2000명씩 죽어 가는 일에 온갖 이유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권리는 헌법 이전의 권리가 아닙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타인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모든 사업자는 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대표가 책임을 떠맡길 수 없어야 합니다. 국가를 대신해 감독과 인허가를 맡는 공무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는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민의 생명권, 죽지 않을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기다리

고 계셨던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향후 더 나은 법을 만드는 일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다음은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저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근로자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를 넘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요지는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면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에게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과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도급의 사고까지 원도급자가 책임지게 하고 경영자와 법인의 중복 처벌,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하는 4종의 가중처벌로 기업 경영 자체를 막겠다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정치권력이 시류에 영합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갖고 도입하지만 결과는 기업가만 옥죄게 만드는 과잉 입법이자 정치 권력의 횡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동법 4조에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 때문에 죄가 된다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산업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아무리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해 면책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서 최근 5년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관리 소홀은 46%, 관리 소홀인지 개인 부주의인지 애매한 경우가 27%, 개인 부주의가 23%라고 합니다.

즉 개인 부주의가 원인인 것이 5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안전시설을 갖춰도 개인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한데 법으로 경영자 처벌에만 치중한다면 누가 건설업이나 기업을 하겠습니까?

셋째, 하도급을 맡긴 원도급자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 입법입니다. 큰 회사는 하청업체가 수백 곳의 넘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 때마다 원청업체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대기업 경영자나 사업주는 평생 감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군에서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 국방장관이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 제조사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넷째, 5년 이내 재발 시 형량 50% 증가하겠다는 것은 기업 경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관리 밖에 있는 하도급 건설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 처벌받고 5년 내에 다시 사고가 나 형량이 50% 증가된다면 이 경영자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평생 감옥에 살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과도한 중복 처벌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자가 처벌받고 법인이 벌금 내고 행정 제재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면 처벌이 아닌 가해 수준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죽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국가가 할 일은 근로자와 경영자 모

두를 위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국민 안전의식 함양, 예방 등 제도적 보완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가가 균형을 상실한 법을 만들고 기업을 죄악시키는 법을 만들면 기업가는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대한민국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김태흠 의원님……

다음은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정의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작년 6월 11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7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전국의 산재 현장과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상황을 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재해 현장과 사고 해결 과정은 한결같이 허점 투성이었던 반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1년이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과 일하다 다치고 아픈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 뻣속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재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줘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아들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 달째 단식농성을 하고 계신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아버님 이용관 님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구의역 김 군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2인 1조 작업을 혼자서 하겠다고 김 군이 주장했습니까? 이전 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서른여덟 분의 하청 노동자들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해도 된다고 노동자들이 결정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부주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까?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개인의 실수로 발생한 비극입니까?

이제는 OECD 부동의 1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 등 시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경영계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법이 모든 기업주를 잠정적 살인자로 본다든 업포는 산업재해가 기업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생명존중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합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에도 호소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은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법 제정의 취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안법에 따라 산재로 죽은 노동자의 목숨값은 평균 420만 원이었습니다.

산재에 대한 사법부의 비판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처벌에 상한액만 있는 법의 한계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는 사법부의 해석과 판결에 상당 부분 위임되었습니다. 부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적극적 해석과 판결을 기대합니다.

정부에도 부탁드립니다. 이 법은 오늘 제정되어도 1년 후에 시행되고 또 그 이후 3년 동안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사각지대 지원 방안에 설득력이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 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되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첫발을 내딛는 것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 법이 대한민국을 산 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야·정부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대 국회에 제일 먼저 정의당의 이름으로 발의한 이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다녀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보류요청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 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책임 있는 자는 엄정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으로 서민과 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번 법안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단식투쟁 등으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기업에 대한 고강도 처벌규정만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더욱이 양대 노총과 경제계 등과의 합의에도 실패해서 이번 법안 추진은 일방 처리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국회에서는 사건·사고 때마다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 반성으로 사회적 참사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사건·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29명이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2017년 말이었습니. 2018년 초 37명이 사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 그리고 지난해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중대재해 근본 원인인 인적 오류, 물적 오류,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종합처방이 함께 제시되어야 제대로 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오류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에 책임 있는 노조 등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논의되고 규정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규정만으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조성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또 다른 차원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모든

위험을 책임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세수에 기여하는 핵심 경제 주체입니다. 세계 유례없는 기업들의 고강도 처벌 강화는 기업 경영 의지와 창업 의지마저 꺾을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세수 기여를 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과 실업률 급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들에게 코로나 사태로 맞은 위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둔기로 뒤통수를 치는 형국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지만 안타깝게도 규제는, 과도한 규제는 약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겨 온 소득주도성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자들에게 저택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본업 외에 투잡을 뛰며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는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 부동산 세제 강화, 주택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강화의 결과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불신,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벌법 제정으로 이러한 기업 처벌·규제 강화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피해로 귀착될 것입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강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과의 거래와 협업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량기업들끼리만 거래하거나 처벌에서 자유로운 해외기업들과 거래하거나 시설 자동화 등으로 재해 요인을 원천 제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에는 일감의 급감, 취약노동자들에게는 대량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입니다. 국내의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과감히 생산 활동 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습니까? 소피 해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만들고 세수 늘려 주는 소와 같은 기업들을 때려잡을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대·21대에 국회, 민의의 정당 이 곳에서 패스트트랙 2개 법과 주택 관련 3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나타난 처참한 결과를 그만 그리고 요즘 똑똑히 똑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급히 만든 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집니다. 부디 이번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보류시켜 보다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내에 중대재해예방특위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보다 국민들에게 외닿을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제21대 국회 정의당의 제호 법안이었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명확히 하자. 그래서 더는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해보자. 정의당의 제안과 호소와 촉구와 농성 그리고 유가족의 단식은 약 열흘간 이어진 법사위 논의 중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자의 요구가 하나씩 잘려

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중재법 제정이 표결을 앞둔 지금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입니다.

저는 어제 밤을 새워 여섯 번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를 거친 이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청을 다룹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화답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사망자 한 명으로 유지할 때는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경총의 요구대로 자유형의 하한은 3년에서 1년으로 가벼워졌고 벌금형의 하한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부의 요구도 수용되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발언입니다.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수행할 때 발주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다.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정부의 요청대로 발주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2월 30일, 기업총수에 대한 책임회피 규정이 마련됩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이사보다 위에 회장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중재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 경영 총책임자의 책임전가를, 직무유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1년 1월 6일,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정부가 요청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전체의 48%나 되지만 산재 사망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핑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해련 소위원장이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한 해 500여 명의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처벌은 예방을 위한 것인데 처벌에서 제외하면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사실상 실효성이 사라집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그 밖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유예, 경영책임자 책임 의무

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금지 및 일터 괴롭힘 예방 삭제,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인허가권 행사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 법인 처벌 시 매출액 기준 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 축소와 하한 삭제 등 본래의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해요. 중대재해가 큰 게 아니에요. 무슨 식당이나 이런 데서 배달원이 사망하는 것을 가지고 중대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도 회의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공이지만 결론을 지은 것은 분명히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습니다. 가진 사람이 먼저다.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이 눈부신 타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상을 말한다고 현실을 모른다고들 말합니다. 아니요, 너무 잘 압니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길고 긴 노동시간은 부지런한 민족성과 성실함으로 포장됩니다. 과로사와 산업재해 사망의 목숨 값은 고작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표결에 기관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정의당의 강령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 값을 달리하는 대안에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지와 응원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떼면 만큼 본래의 입법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석**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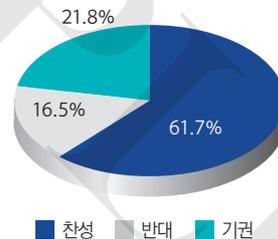
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  
권 58인으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5건)**

- [210037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4인)
- [2105290]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의원등45인)
- [2106436]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범계의원등12인)
- [2105421]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의원 등 11인)
- [210601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2021. 01. 08 / 2021. 01. 08
- 발의자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표결의원: 재석 266인 / 제적 300인
- 표결결과: 원안가결 266인(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



**의원별 정보**

**찬성 164인**  
 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협·김교흥·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병석·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재호·박 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설 훈·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용혜인·우원식·위성근·유기홍·유동수·유상범·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석·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현·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택·이장섭·이정문·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전용기·전재수·전주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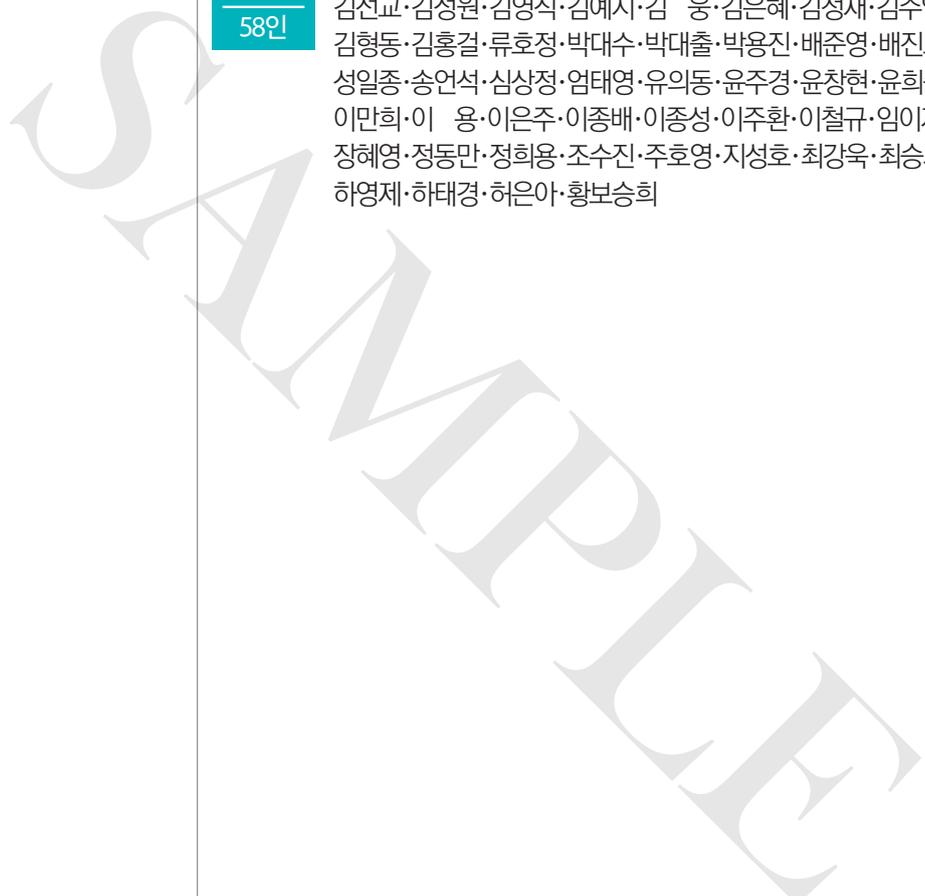
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찬민·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  
조오섭·조응천·조정식·조정훈·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종윤·  
최혜영·한병도·한준호·허 영·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  
홍정민·황 희

반대  
44인

곽상도·권성동·권영세·권은희·김석기·김용판·김태흠·김희곤·김희국·  
류성걸·박성민·박수영·박완수·박 진·박형수·배현진·백종현·서범수·  
서병수·송석준·신원식·안병길·양금희·유경준·윤두현·윤재옥·윤한홍·  
이 영·이원욱·이태규·이현승·장제원·정경희·정운천·조명희·조태용·  
최연숙·최춘식·최형두·추경호·한기호·한무경·홍석준·홍준표

기권  
58인

강대식·강민국·강민정·강은미·구자근·권명호·김경만·김도읍·김미애·  
김선교·김성원·김영식·김예지·김 웅·김은혜·김정재·김주영·김진애·  
김형동·김홍걸·류호정·박대수·박대출·박용진·배준영·배진교·서일준·  
성일종·송언석·심상정·엄태영·유의동·윤주경·윤창현·윤희숙·이달곤·  
이만희·이 용·이은주·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임이자·장철민·  
장혜영·정동만·정희용·조수진·주호영·지성호·최강욱·최승재·태영호·  
하영제·하태경·허은아·황보승희



안건

국회의원  
추천안

국회의원  
추천안

국회본회의

# P&B Report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 일정표

# 용어 해설

##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지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 제안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 대체토론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반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 정부이송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SAMPLE

# Policy & Busines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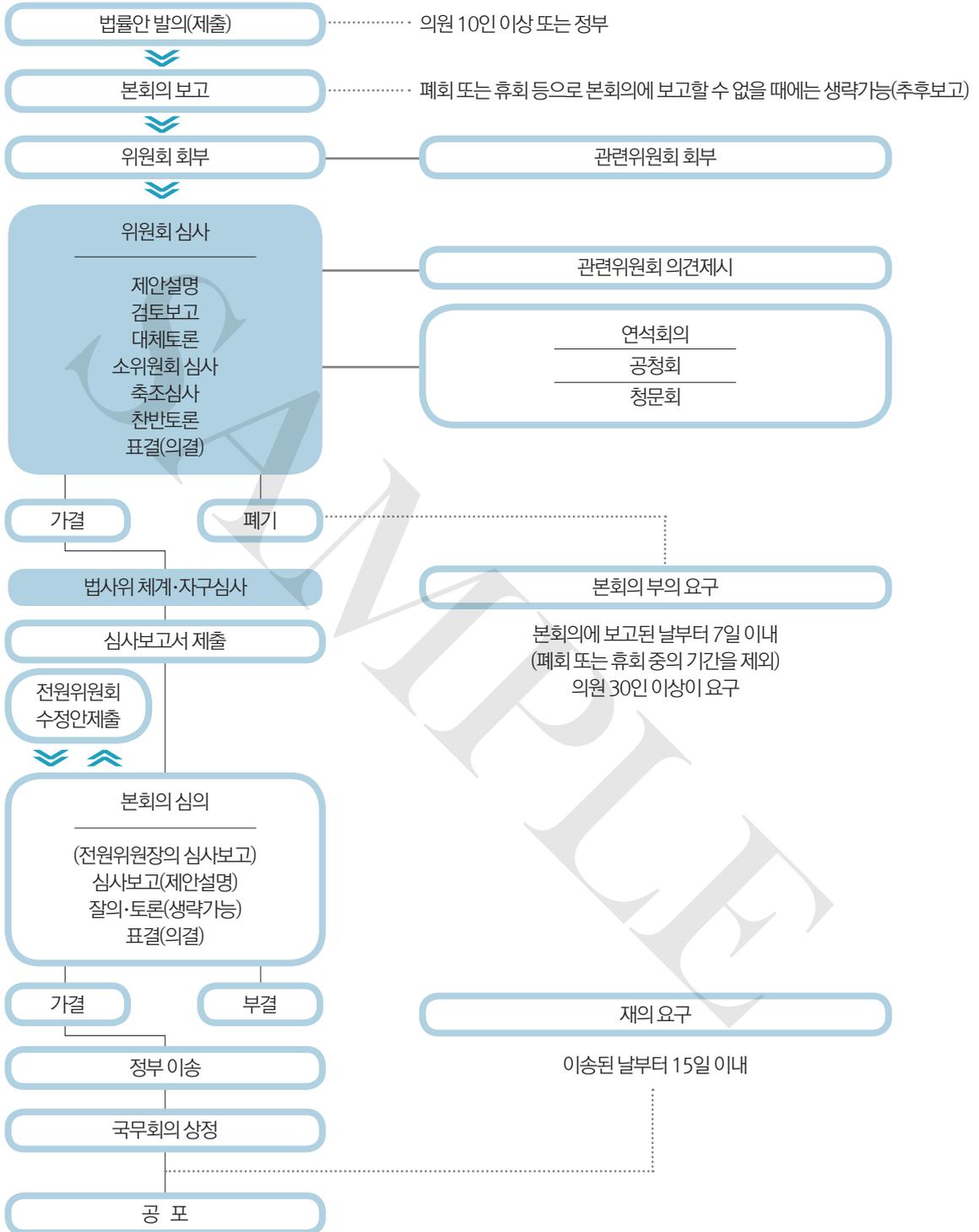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의정록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권은  
국회 <http://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 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http://www.draju.com)